



1

1

(承諾) (請約)
“ ”, “ ”, “ ”
.) ()가
가 , , ,
) , 1 (“
” .)
(“ ”) ()
) 30 가 ()
) 30 가
가 1
가 1
“ ” .)+1%
가 1

2

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(撤回)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,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 단,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3

가 ()

가

가 1

가 2 10 (())

.)

3

2

1. , ()
()가 ,
()가
()가

2. 1
()가 ,

2

4 가

1. ()

2. 15 , (心神喪失者)
(心神薄弱者) ()
)

5

가 ()

1. 가

2. ()

3.

가 1 1 가

가 1 2

()

가 ()

6 ()

①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변경 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는 변경 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와 같은 성(性)에 한합니다.

② 회사는 변경 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③ 제1항의 경우 변경 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변경신청서(회사양식)를 접수한 때부터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자격을 상실하며,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변경 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.

④ 제3항의 경우 변경 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.

⑤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조(보험계약의 성립) 제2항 내지 제4항, 제2조(청약의 철회), 제8조(계약의 소멸), 제10조(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) 제2항 내지 제4항, 제18조(계약전 알릴 의무) 및 제19조(계약전 알

릴 의무 위반의 효과)를 준용합니다.

7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8 12 ()가
가
가 ()가
가 . , 6 (()) () .

9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. 단, 제4조(계약의 무효)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.
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,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.

2 ()
10 1 1
(
, 가 .)

가 1
1
.(1
“ ”
“ ” .)
가 1
가

- 2 가
1. 19 ()
가
 2. 18 ()
()가
가
()
가
가

3 ()

11

이 계약에서 “대중교통사고”라 함은 대중교통사고분류표(별표 3 참조)에서 정한 재해사고(이하 “대중교통사고”라 합니다.)를 말합니다.

12

()
가

(1 “)

13

8 () 2 12 ()
() 가
(失踪宣告) ,
27 () 2
(4
)

가

14

가
가
(解止)

1. ()가
, ()가

2. ()가
()
()가
()
()
()

3. 가 ()

1 가

1. 1 1

2. 1 2

3. 1 3

15

회사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전쟁,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
16

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.

17

보험금 청구권, 보험료 또는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4

18

() ()
()

(“ ” , “
 ” .) . 3
 ()

19

()가
 18 ()

가

가

1. 가

2. 가 1

가 2 (

3. 가 1) ()

()가

4. (“ ”)
 .)가 ()

1

가

가

•

“가

;

가 1

21

-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

22

()

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를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상속인으로 합니다.

23

-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.
-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(連帶)로 합니다.

24

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나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는 제12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25

①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. 청구서 (회사양식)
2. 사고증명서(사망진단서)
3.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)
4.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
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26

25 ()
,
3
· ,
10
·
12 ()
가
7 가
()
, 1
“ ”(2)
·
, ()
() 19 ()
() 1
,

. ,
 .
 가
 1
 ,
 가
 () ()
 ,
 ()
 가
 가
 가 1
 , ()
 가 ,
 , ()
 , ()가 가
 가 ,
 ()
 가
 () 가 3
 3
 “ 가 ” “ 3 ”
 3 ()
 , 가
 .
 1 5 ,
) ()가 (

(가
)

27

① 계약자(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)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2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,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
28

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 등)의 규정을 따릅니다.

1.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2. 계약일, 보험종목, 보험료,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
3.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
4.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질병에 관한 정보

29

이 계약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을 행하지 아니합니다.

6

30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1

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32

-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.

33 가

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(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)제작의 보험안내자료(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.)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

34

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,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보장을 합니다.

35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
36

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.

【 별표 1 】

(기준: 1구좌)

급부 명칭	지 급 사 유	지 급 금 액
사 망 보험금	보험기간 중 보험대상 자(피보험자)에게 대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대중교통사고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경우	2,000만원지급

- 주) 1.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대중교통사고를 직접
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
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2.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대중교통사고 이외의
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
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보험대
상자(피보험자)가 제6조(보험대상자(피보험
자)의 변경)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합니다.

【 별표 2 】

(25 2)

구 분	적 립 기 간	지 급 이 자
사망보험금 (제12조)	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	보험계약 대출이율

- 주) 1.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, 소멸시
효(제17조)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
습니다.
2.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
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
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【 별표 3 】

1.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써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.
 - 가.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
 - 나. 대중교통수단에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탑승목적으로 승·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
 - 다.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
 - 라.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(1)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, 운행중의 교통승용구(적재물을 포함합니다.)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
 - (2)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(입장객을 포함합니다.)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2. 제1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.
 - 가. 여객수송용 항공기
 - 나.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
 - 다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
 - (1)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
 - (2) 시외버스 운송사업
 - (3) 택시운송사업
 - (4)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(전세버스 및 셔틀버스 제외)

【 별표 4 】

1.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- ①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상의 (S00~Y84)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
-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

2.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-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
 -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
 -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(X50)
 -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(X52)
 - 식량결핍(X53)
 - 수분결핍(X54)
 - 상세불명의 결핍(X57)
 - 고의적 자해(X60~X84)
 - "법적 개입" 중 법적처형(Y35.5)
 - ③ "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(Y60~Y69)"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(단,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(Y83~Y84)는 보상)
 - ④ "자연의 힘에 노출(X30~X39)"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
 - ⑤ "불의의 물에 빠짐(W65~W74),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(W75~W84),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(W44)"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
- (주) ()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고시 제2002-1호, 2003.1.1시행)상의 분류번호이며,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.